

##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Tops 펀더멘탈 인덱스 주식투자신탁 1호

2. 시행일 : 2007. 6. 5.

### 3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

◇ 변경 사유 :

- (1) A 클래스 판매회사 보수 인상
- (2) 종류별 판매기준 변경

◇ 변경 대비표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<p><b>제 20 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</p> <p>1. A 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이 10 억 원 이상인 경우</p> <p>2. C1 클래스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이 10 억 원 미만인 경우</p> <p>3. C2 클래스 수익증권 : 온라인 가입자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<b>제 20 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</p> <p>1. A 클래스 수익증권 : 가입제한 없음 (선취판매수수료 있음)</p> <p>2. C1 클래스 수익증권 : 가입제한 없음 (선취판매수수료 없음)</p> <p>3. C2 클래스 수익증권 : 온라인 가입자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~② (생략)</p> <p>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A 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연 1000 분의 4.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0</p> <p>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</p> <p>2. C1 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연 1000 분의 4.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1.0</p>	<p><b>제 40 조(투자신탁보수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A 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연 1000 분의 4.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0</p> <p>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</p> <p>2. C1 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연 1000 분의 4.0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11.0</p>

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 3. C2 클래스 수익증권 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 연 1000 분의 4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0 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	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 3. C2 클래스 수익증권 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:연 1000 분의 4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5.0 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3
<u>&lt;부칙 신설&gt;</u>	<b>부 칙</b> 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7 년 6 월 5 일부 터 시행한다.

